

2025

#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관련법령2

국가유산수리법, 매장유산법 등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  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2시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별표 정리
- 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시험 필독서

도서명 : 국가유산관련법령2

ISBN : 979-11-94286-54-7

발간일 : 2024-12-3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hanmail.net](mailto:by4782@hanmail.net)

정가 : 20,000원



# 국가유산관련법령2

## [목차]

제1편 국가유산수리법(p6)

제2편 매장유산법(p105)

제3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(p143)

제4편 고도육성법(p157)

제5편 문화유산신탁법(p192)

제6편 무형유산법(p218~264)

## [용어/약어]

- 유산청은 국가유산청
- 청장은 국가유산청장

- 국가등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
- 중앙기관장은 (관계, 해당) 중앙행정기관의 장
- 부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
- 유산위는 문화유산위원회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 
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 
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 
시, 군, 자치구
-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 
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

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, 군, 자치구

- 지자체장은 시도지사, 시군구

- 부의는 심의나 회의에 부치는

- 거부등은 거부, 방해, 기피

- 시행자는 사업시행자

- 사유없이는 정당한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

-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

- 명의대여는,

· 타인이 자기 성명, 상호를 사용해 업무하게

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업무

· 자격증, 등록증 등을 대여하거나 받거나,

이를 알선

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붉은색은 시행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 제1편 국가유산수리법

수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법)

## [약어]

- 수리는 (전통건축수리 이외는) 국가유산수리

- 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업
- 수리등은 수리, 실측설계, 감리
- 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업, 실측설계업, 감리업
- 업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
- 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업자,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, 국가유산감리업자
- 재단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
- 현장은 국가유산수리 현장

## 제1장 총칙

1~7조

### 1. 목적

- 국가유산 원형 보존, 계승을 위해 수리등, 수리업 등록,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정함
- 수리 품질향상,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

## 2. 정의

1) 수리는 다음 보수, 복원, 정비, 손상 방지 조치

가) 지정문화유산, 천연기념물등

나) 임시지정문화유산, 임시지정천연기념물, 임시지정명승

다) 상기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/형성하는



주위의 다음 시설물/조경

a) 보호구역내 시설물/조경

b) 소유자/관리단체가 관리하는 토지내 유산

보존/활용에 필요한 시설물/조경

c) 사적은 제외

## 2) 보존처리

- 원형보존을 위해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, 화학적 조치 등의 수리

## 3) 보존처리계획

- 인문학적/과학적 조사/분석을 통해 손상 정도/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 정함

#### **4) 국가유산수리기술자(이하 기술자)**

- 기술적 업무, 기능자 작업 지도/감독하는 기술자 자격증 받은 자

#### **5) 국가유산수리기능자(이하 기능자)**

- 기술자의 지도/감독 받아 기능적 업무하는 기능자 자격증 받은 자

#### **6) 수리업**

- 법에 따른 수리를 업으로 함

#### **7) 국가유산업자(이하 업자)**

- 수리업 등록하고 수리업 영위

## 8) 실측설계

- 수리/기록 보존을 위해 실측, 고증 조사 등을 통해 실측도서, 설계도서 등 작성

## 9) 국가유산실측설계업(이하 설계업)

- 실측설계를 업으로 함

## 10)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(이하 설계업자)

- 설계업 등록하고 설계업 영위

## 1) 감리

### 가) 일반감리

- 설계도서, 관계 서류, 관계 법령 대로 수리

여부 확인, 수리 지도/감독

나) 책임감리

-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 
행사하는 감독권한 대행

**2) 국가유산감리업(이하 감리업)**

-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함

**3) 국가유산감리업자(이하 감리업자)**

- 감리업 등록하고 감리업 영위

**4) 국가유산감리원(이하 감리원)**

- 기술자로서 감리업자나 재단에 소속되어  
수리 감리

## 5) 도급

- 원도급, 하도급, 위탁 등 명칭 불문
- 일방이 수리등 완성, 상대방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

## 6) 발주자

- 업자등에 수리등 도급
- 단,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수리를 하도급하는 자 제외

## 7) 수급인

- 발주자로부터 수리등을 도급받은 업자등

## 8) 하도급

- 수급인이 도급받은 수리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3자와 체결하는 계약

## 9) 하수급인

- 수급인으로부터 수리를 하도급받은 자

## 3. 수리등의 기본원칙

-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 사용
- 지정문화유산, 천연기념물등과 주변 경관 훼손 금지

## 4. 수리등의 계획 수립

가. 청장은 체계적/종합적 수리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 의견 들은 후 수리기술위 심의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

- 문화유산기본계획,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 요
- 수립하면 시도지사에 통보

나.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 수립/시행

## 5. 수리기술위

- 유산청에 둔다

가. 심의 사항

- 1) 기본계획
- 2) 수리등 기준
- 3) 국가지정문화유산, 천연기념물/명승 수리등 계획
- 4) 청장 부의 설계승인 심사
- 5) 수리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사항
  -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, 비축
  - 전통건축 부재 수집/활용
  - 청장 인정 사항

## 나. 위원

- 위원장 1명 포함 30명내

- 1) 다음 중 청장이 위촉



- 고등교육법상 학교 관련 학과 전직/현직  
부교수 이상
- 관련 업무 10년 이상
- 건축, 자연과학, 공학, 환경, 법률, 종교, 미술,  
공예 등 10년 이상 종사한, 수리등 지식/경험  
풍부한 자

2)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

## 다. 분과위

- 유산 종류별 심의를 위해 둘 수 있다
- 필요시 다른 분과위와 합동분과위 개최
- 분과위/합동분과위 심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  
의제

**라. 전문위원:** 둘 수 있다

- 청장, 분과위 위원장 명 받아 위원회  
심의사항 자료 수집/조사, 연구

## **6. 시도유산수리기술위**

가) 시도지사는 둘 수 있다

나) 심의 사항

- 시도지정문화유산, 문화유산자료,

시도자연유산 수리등 계획

- 수리등 품질 향상을 위한 조례 사항

다) 이외 시도 조례로 정함

## 7.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

가. **소유자, 지정 관리단체(이하 소유자등)**은  
업자에 수리하게 하거나 기술자 및 기능자가  
함께 수리하게 해야 함

- 예외) 유산 보존에 영향없는 다음의 경미한 수리

1) 지정문화유산, 천연기념물등,  
임시지정문화유산, 임시지정천연기념물,  
임시지정명승

- 창호지, 장판지, 벽지 바름

- 벽화/단청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

부분적으로 바름

- 누수 방지를 위해,

·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

· 지붕면적 1/10 이하나 20제곱미터 이하 기와 고르기

- 화장실을 기존 형태로 보수

- 표지돌, 안내판, 경고판 설치/보수

- 잔디를 보충해 심거나 깎기

- 기존 배수로/연못 준설

- 보호 울타리 부식 부분을 기존 형태로 보수/도색